「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공공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1. 제 출 자: 구 미 시 장

2. 제안이유

가. 본 사업은 구미시 내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소비자들의 할인 혜택을 확대하는 위한 사업으로,

나.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사무를 위탁하기 위해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6조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

3. 주요내용

가. 사 무 명 : 2027년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나. 추진근거 및 필요성

1) 추진근거

가)「지방자치법」제117조

나)「구미시 사무위탁 조례」제4조, 제6조

다)「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제4조, 제12조

2) 필요성 : 사업 수행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공공기관에 위탁 필요

다. 위탁 사무 내용 : 공공배달앱 운영사업 전반

라. 위탁시설(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등) : 해당없음

마. 위탁기간 : 2027. 1. ~ 2027. 12.

바.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500백만원(시비)

구 분	금액(백만원)	산 출 근거
합 계	500	
직 접 비	462.5	・프로모션 지원금(안) 462.5백만원 - 공공배달앱 지역쿠폰 연계 할인쿠폰 166.5백만원 - 굿미쿠폰(평일 매일 할인쿠폰 지급) 147.6백만원 - 배달비 지원 90.8백만원 - 축제연계 할인 쿠폰 33백만원 - 기타 할인 프로모션 24.6백만원
간 접 비	37.5	・ 사무관리비 6백만원 ・ 국내여비 1.5백만원 ・ 위탁대행수수료 30백만원

사. 적정성 검토결과 : 적정

※ 일자리경제과 공공위탁 및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의(2026. 9. 28.)

아. 위탁구분 : 재계약(수탁기관 :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

4. 부서의견

○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의 성공적인 수행을 위해서는 전문성과 능률성을 갖춘 전문기관에 위탁함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 2022년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의 최초 위탁 이후 공공배달앱 가맹점수는 약 2배, 회원 수는 약 4.4배 증가하였으며, 연간 한정된 예산을 예산 소진 추이 모니터링 등으로 시의적절하게 집행, 정산하여 공공배달앱 운영사와 구미시간의 업무를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1)「지방자치법」 제117조

2) 「구미시 사무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3)「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 제12조

나. 예산조치 : 2027년도 당초예산 500백만원(시비) 편성 예정

다. 성과평가 결과 및 성과보고서, 감사결과 : 안건 참조

6.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 소상공인 경영 부담 완화와 외식물가 안정을 위한 「공공배달앱 운영사업」의 지속 추진을 위해, 관련 사무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고자 제출된 안으로,

○ 검토 결과,

- 수탁기관인 (재)경상북도경제진흥원은 2021년 사업 개시 이후 가맹점 및 누적 매출 규모를 확대해 왔으며, 성과평가와 자체 감사 등에서 별다른 지적사항 없이 운영되어 온 점 등을 종합할 때 본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에 적정한 기관으로 판단됨.

- 특히 총 5억 원의 예산으로 지역쿠폰 연계, 평일 굿미 쿠폰, 배달비 지원 및 축제 연계 프로모션 등을 다채롭게 구성하여 소비자 이용 활성화와 소상공인 실익 증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다만, 관련 부서에서는 예산 규모가 확대(2억 -> 5억)된 만큼 사업비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되도록 관리하고, 할인 쿠폰 지급 등의 단기적 지원을 넘어 소상공인이 실질적인 자생력을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여야 할 것임.